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책임보험·책임공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조의2, 제5조제5항 신설 등).
-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특정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설명과정에서의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임원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부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피신청인의 무응답 시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하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 등).

- 조정중재원은 조정 자동개시 의료사고 등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 분쟁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이 있는 경우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등).
-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6조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의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신설).
-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 등).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함(안 제47조 삭제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설).
-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등이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안 제54조).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이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다만,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나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5조, 제56조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

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기관의견

- 법원행정처는 안 제54조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서 제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개 정 안	법 원 수 정 안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u>성립된 경우</u> 4. 「민사소송법」에 따라 <u>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u>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u>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u> 4. 「민사소송법」에 따라 <u>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u>

(전문위원 박 혜 진)